제2625호 2019. 1. 7. 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: 공 보 실 장 김 창 수

전화: 3396-4952
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 기관의장 람

구



● 규 칙

제701호 :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2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http://www.junggu.seoul.kr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2 / FAX.(02)3396-9022/3
-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-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



제2625호 3-2 2019. 1. 7.

규 칙

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19년 1월 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◉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01호

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"숙직근무자의 휴무"를 "당직근무자의 휴무"로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일직 근무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되, 일직 근무 종료일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.

제2625호 3-3 2019. 1. 7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<u>숙직</u> 근무자의 휴무)	제5조(<u>당직</u> 근무자의 휴무)
①~② (생략)	①~②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일직 근무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되, 일직 근무 종료일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 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.

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이유

-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휴일 근무 후 휴무일 부여에 관한 사항 반영
- 중구청 소속 직원의 일직 근무 후 대체휴무 허용에 관한 근거 마련
- 당직 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 향상 도모

2. 주요내용

- 일직 근무자의 휴무 조항 신설(제5조제3항)
 - 일직 근무 종료일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